

# 천연기념물(식물)의 유형 및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비교 고찰<sup>•</sup>

손지원\* · 신진호 · 지윤의 · 이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Corresponding Author : wine814@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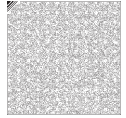
## 국 문 초 록

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유럽에서 먼저 제도로 정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천연기념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 등이 있다. 독일은 자연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장하고 있어 발전과정과 지향점이 유사하다. 천연기념물제도는 1930년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와 여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 및 유형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있어 식물의 학술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식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있어 점 단위 지정에서 면 단위로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연유산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잠재 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천연기념물 식물 유산의 신규 유형 개발 및 지정기준 개정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주제어 자연유산, 문화재보호법, 식물, 일본, 독일

투고일자 2017. 02. 14 • 심사일자 2017. 04. 26 • 게재확정일자 2017. 05. 11



## I. 서론

천연기념물(Natural monument)은 19세기초 독일의 박물학자인 알렉산더 훔볼트(Friedrich Heinrich Alexander, Freiherr von Humboldt)가 그의 저서인 『신대륙 열대지방기행』에서 자만 델 구아이루(Zamang der Guayre)라 불리는 거대한 노거수를 지칭하면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시초는 분명치 않다. 시나다(品田 穰)의 「천연기념물 보호의 역사와 그 의의」(1972)에 의하면 당시에 천연기념물이란 용어는 생겼지만,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아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sup>1</sup> 하지만 산업발전에 따른 자연자원의 이용 및 훼손이 심각해지자 자연을 보호하는 형태로 노력이 이루어졌고 천연기념물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1803년 독일에서는 함부르크(Hamburg) 부근의 임목 매입을 통한 보존을 시작으로 1906년 천연기념물 관리국을 설치하였고, 뒤이어 영국에서는 1868년 공유지 보존협회, 1885년 야생생물보존학회가 설립되었다. 미국에서는 1872년 옐로우스톤국립공원이 지정되는 등 자연보호 기조와 더불어 천연기념물이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독일 등 서구권에서 천연기념물제도가 먼저 시작되었고 일본에서 이를 도입하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다. 해방 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자연물이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및 공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자연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제도 등이 마련되면서 학술성에 중점을 두었던 천연기념물의 정의 및 지정기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고, 관련 주변여건이 바뀌어옴에 따라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의 정체성과 가치, 향후 지정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을 되짚어 보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외 사례 고찰을 통해 향후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지형, 천연보호구역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식물은 전체 지정건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천연기념물(식물)에 관한 연구는 생육환경 및 식생구조, 식생특성 분석<sup>3</sup>과 천연기념물 노거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sup>4</sup> 등 식물의 식생구조 분석,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반면,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천연기념물제도 연구의 한 부분으로 식물의 지정기준 변화, 국내·외 관련법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우철(1969)은 천연기념물의 유래와 1930년대~1960년대 관련 법제도의 전개과정, 천연기념물 지정현황(1968년 기준)에 관해 최초로 정리하였으며, 나명하 외(2007a)·나

1 文化庁, 2016, www.bunka.go.jp; wikipedia백과사전, 2016, www.ja.wikipedia.org.

2 이우철, 1969, 「천연기념물에 관한 소고」 『한국식물분류학회지』 1(1), pp.27~35; 이선, 2008,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연원과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3), pp.41~53.

3 유창민, 2008, 「천연기념물 식물 군락지의 보호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축척 수림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1), pp.85~96; 김동욱 · 허복수 · 이승주 · 김효정, 2011, 「천연기념물 제514호 영덕 도천리 도천숲의 생태계 현황 및 수목 생육 특성 -식물생태계현황을 중심으로-」 『문화재』 44(1), pp.122~137; 김효정, 2012, 「천연기념물 식물의 토양현황과 관리방안 -충남북지역 노거수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0, pp.41~52; 이지혜, 2014, 「홍도천연보호구역의 식생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94; 최병기 · 이진범, 2015,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림의 식물생태학적 가치 제고」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4), pp.87~98.

4 강현경 · 이승재, 2004,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관리방안 2」 『환경복원논총』 7(2), pp.36~46; 김태식 · 이창훈 · 박인환 · 이혜영, 2009, 「전라도지역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생육 환경 분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pp.136~174; 손지원 · 신진호, 2016, 「관리시설에 따른 천연기념물 노거수 생육상태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0(3), pp.415~422.

명하(2009)·이선(2008, 2009)은 이우철(1969)을 보완하고 「고적 명승 보물 천연기념물 보존령」과 「문화재보호법」의 전개과정, 지정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독일·일본·대만 등 국외 관련 법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외 남·북한 천연기념물제도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sup>5</sup>가 있었고, 미국·영국·중국 등 각 국가들의 문화재 보호법제를 조사·번역한 연구<sup>6</sup>가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청(2010)의 경우 연구범위가 방대하여 천연기념물에 관해서는 개괄적 수준에서만 다루고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서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제도의 역사 및 전개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법 개정 사항을 포함한 후속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내·외 식물의 지정방향에 대한 사례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식물의 지정방향 및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찾는다.

이를 위해 첫째, 천연기념물(식물)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천연기념물의 제도 및 가치, 지정기준의 변화상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식물)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천연기념물(식물)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그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천연기념물(식물)에 중점을 두고, 국외 사례 조사는 천연기념물제도를 운영

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독일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이외 오스트리아도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있으나 독일의 지정기준 및 유형과 유사하여 사례 고찰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내용은 국내, 일본, 독일의 관련 법제도 및 개정내용, 지정현황 등에 대한 문헌자료,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식물) 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국가의 문화재보호법, 연방자연보호법(독일), 문화재청 및 문화청(일본) 자료, 문화재대관,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내 천연기념물제도의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일본 및 독일은 가장 최근의 법 개정내용(일본 2005; 독일 2009)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다만, 일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관한 부분은 1920년부터 현대까지의 변화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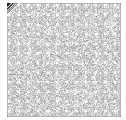
### 1.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식물) 제도 및 정책의 흐름

#### 1) 천연기념물(식물) 제도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제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심 및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천연기념물 조사는 1913년 일본산림회(大日本山林會)에서 은행나무 8주 등 28주의 조선 노수명목(老樹名木)을 포함하여 『대일본노수명목지(大日本老樹名木誌)』를 작성한 것을 시점으로 한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전국적으로 조선의 노거수를 조사하고 1919년 『조선거수노수명목지(朝鮮巨樹老樹名木誌)』를 간행하였다. 총64종 5,330본의 노거수를 조사하고 성격별로는 명목, 신목, 풍치목, 당산목, 호안목, 정자목, 피서목 등 7개로 나누고, 지역별, 수

5 박종민, 2003, 「북한의 천연기념물 관련제도와 현황」 『한국정원학회지』 21(2), pp.40~51; 나명하·홍윤순·김학범, 2007a,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관리제도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35(2), pp.71~80; 나명하·홍윤순·김학범, 2007b,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35(5), pp.92~99; 김성욱, 2010, 「북한의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5(1), pp.501~533.

6 문화재청, 2010,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p.300.



종별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 분포하는 노거수가 1,166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32%가 전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벚솔한 나무는 소나무, 배나무, 들매나무 등 5주로 조사되었다.<sup>7</sup>

이선(2008)은 일제가 민족신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람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노거수를 조사하여 목록화 하였던 일련의 행동을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았다. 이후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을 제정함으로써 천연기념물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1934년 보존위원회를 결성하여 34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문화재 보존요목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1934년 천연기념물 제1호 경북 달성 측백나무 등 식물 11건과 동물 5건이 최초 지정되었고, 1944년까지 7차에 걸친 위원회를 실시하여 식물 102건을 포함하여 147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다.<sup>8</sup>

해방 이후에도 「보존령」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어오다가 1955년 문교부 산하의 '문화국 문화보존과'가 구성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통해 문화재보존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같은 해 북한소재 및 멸실된 천연기념물을 해제하고 98개소를 재지정<sup>9</sup>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 2) 정책의 흐름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천연기념물 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은 196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되었고, 1970년까지 천연보호구역과 동물 중 및 서식지, 동굴, 화석 등의 다양한 천연기념물 78건이 추가 지정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있어 자연유산의 희소성은 중요한 가치로 큰고니와 사향노루 등 희귀한 동물 종이 다수 지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문화재분야 예산 증

대와 '문화재보존관리 5개년계획' 수립 등을 통해 1980년까지 35건의 천연기념물이 추가 지정되었고 동·식물 보호관리 업무가 강화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문화재주변 경관 및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문화재구역 확대와 더불어 개체 단위 문화재에 대한 지정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천연기념물(식물)의 경우 전국 노거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59건의 노거수가 추가 지정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7년 '문화유산의 해' 지정 및 199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청으로의 승격 등 문화재관리의 틀이 체계화되었다. 천연기념물은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24건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총 564건(2015.6 기준)에 달한다. 특히 기존에는 추천받은 대상에 대한 선별적 조사를 통해 지정이 이루어지는 소극적 형태의 지정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마을숲 문화재조사'를 시작으로 분야별 자원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 및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 3) 천연기념물(식물) 지정기준 흐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천연기념물 지정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는 보존위원회를 설립하여 보존요목을 결정하였다.

보존위원회는 1934년 동물, 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에 대하여 보존요목을 마련하였고, 식물에 해당하는 보존요목은 19개로 구성되었다. 해방후인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4년 동법 시행규칙에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을 담았고, 2010년 개정 후 현재까지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은 「조선보물고

7 조선총독부, 1919, 「조선거수로수명목지(朝鮮巨樹老樹名木誌)」; 이우철, 1969, 앞의 논문 재인용.

8 이우철, 1969, 앞의 논문; 이선 2008, 앞의 논문.

9 1962년 12월 7일 문교부고시 제167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재지정.

적명승보존요목(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要目)<sup>10</sup>을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일제강점기와 비교하여 주요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표 1).

「보존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비교해보면 2001년 개정을 통해 「진희한 식물·소재지」에서 「문화·민

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동·식물」로, 「학술상 가치가 있는 수목」에서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수목」, 「희소한 유용식물」에서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식물」 등으로 보완되었고, 2010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표 1. 천연기념물(식물) 지정기준 시대별 비교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요목 (일제강점기) <sup>11</sup>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964~200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천, 호소, 하해 등에 생육하는 수초류, 조류, 선류, 태류, 지의류 등으로 진희한 것</li> <li>• 대표적 석회암 식물, 암상 식물 및 건생 식물 군락</li> <li>• 동혈내(洞穴內) 또는 룡호(龍壺)로서 고유의 식물이 발생해 있는 곳</li> <li>• 흘러내리는 운수 중에서 고유의 하등 식물이 발생해 있는 곳</li> <li>• 난류, 영골 식물 또는 고등 은화(隱花)식물이 무성하게 나있는 곳이나 이들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임수</li> <li>• 도서로서 그 곳의 식물상이 특이한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희한 식물 소재지</li> <li>• 절명의 위기에 처한 식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자생지</li> <li>* (2001.9.8. 개정 시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상 가치가 있는 사총(社叢), 저명한 줄나무, 명목, 거수, 노수, 진기한 나무, 기형수 등</li> <li>• 어떤 목적에 의해 보호된 수목 군락으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방수림, 방풍림, 풍치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거수·노수·기형목</li> <li>* (2001.9.8. 개정 시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 원시림, 희유의 임상</li> <li>• 대표적 고산 식물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뚜렷한 식물 분포의 경계를 나타내는 장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명한 동·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희소하거나 장차 희소해질 우려가 있는 야생의 유용 식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li> <li>* (2001.9.8. 개정 시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삼림(化石森林)의 소재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li> <li>* (2001.9.8. 개정 시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li> </ul>

10 조선총독부, 1934, 『조선총독부고적명승천연기념요목(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要目)』.

11 이선, 2009, 『한국의 자연 유산 천연기념물의 역사와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 수류산방, pp.51~82.





초기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이 식물의 희소성, 학술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역사적, 민속적, 경관적 가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천연기념물의 개념도 ‘자연 가운데 그것이 가진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 『천연기념물백서』<sup>12</sup>에서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으로 특히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류문화 환경의 일부’<sup>13</sup>로 정의되면서 천연기념물이 내포하고 있는 민족의 풍습, 신앙, 문화활동과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외 식물의 형태적 측면에서 시대별 식물의 지정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지정 초기부터 현재까지 개체 단위의 노거수 지정비중이 수림지, 마을숲, 자생지, 분포한계지 등 면 단위 지정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에는 ‘전국 노거수 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한꺼번에 노거수를 지정함에 따라 노거수의 지정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도 개체 단위 중심으로 식물

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부산 구포동 팽나무’를 ‘구포동 당숲’,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를 ‘삼척 갈전리 당숲’으로 주변의 노거수를 묶어 군락으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1).

## 2. 일본의 천연기념물

### 1) 제도 및 식물의 지정기준

일본에서는 1906년 미요시 마나부(三好 学)가 명목(名木) 보존의 중요성을 주장한 논문을 시점으로 자연보호의 기초를 반영하여 천연기념물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사적 및 천연기념물보존에 관한 건의안」이 가결되고,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이 제정된 후 1950년 다른 문화재 관련법을 통합하여 「문화재보호법」이 정립되었다.<sup>14</sup>

우리나라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많은 부분 수용하였기에 두 나라간의 천연기념물제도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일본에서도 기념물의 한 종류에 천연기념물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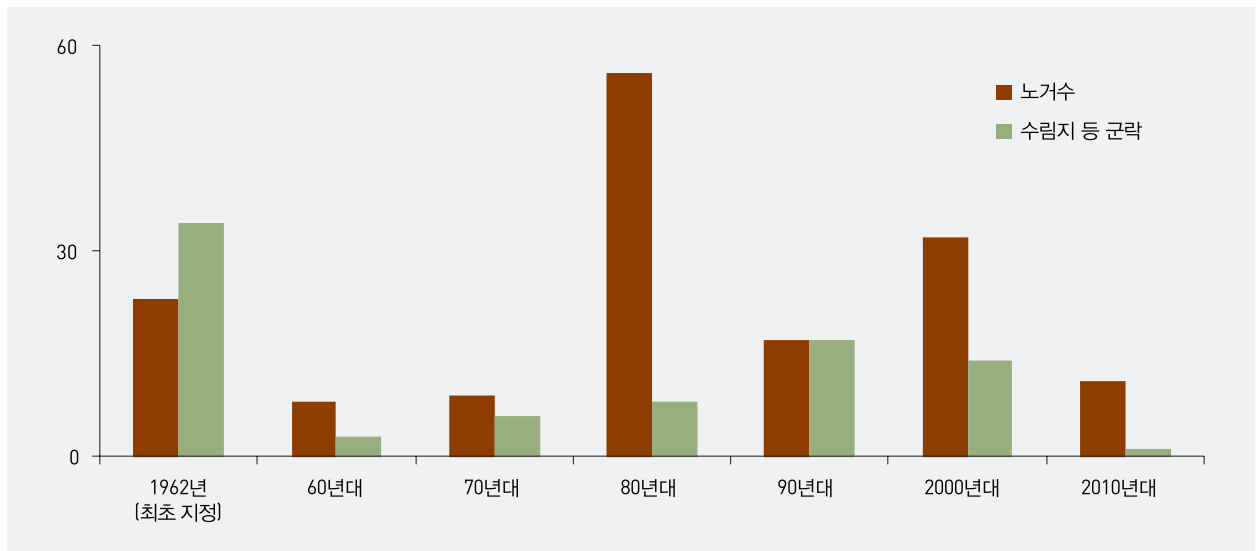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식물)의 시대별 지정현황.

12 문화재관리국, 1998, 『천연기념물백서』, p.250.

13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백서』, pp.17~20.

14 Kamei, M. and Nakagoshi, N., 2000, The effectiveness of plant protection under Japan's natural monuments system, Landscape Research Japan 65(5)

으며 이외 사적, 명승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에는 동물, 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이 있으며, 이 중에서 세계적 또는 국가적으로 가치가 특히 높은 것을 특별천연기념물로 따로 지정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09조 제2항).<sup>15</sup>

천연기념물(식물)로는 명목, 거목, 고목, 기형 나무 재배 식물의 모수, 가로수, 사총(社叢, 신사 또는 사찰 내 신성한 숲), 대표적 원시림 및 희귀 숲, 대표적인 이탄식물 지대, 대표적인 고산식물 지대, 동굴의 자생 식물군락, 착생식물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암석이나 나무, 식물 분포한계지, 재배식물 자생지, 희귀 또는 멸종위기 식물의 자생지 등을 지정하고 있다. 주로 학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정기준이 수립되어 있지만 ‘재배식물 자생지’와 ‘기형목 재배식물의 모수’ 등 오랜 세월에 따른 문화적 활동의 소산인 재배된 이차식물도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표 2).

천연기념물은 특별천연기념물 75개소를 포함한 1,01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식물은 548개소(특별천연기념물 30개)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이외 동물은 194개소, 지질광물은 246개소, 천연보호구역은 2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표 3).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의 종류로는 가로수, 노거수, 희귀종(멸종위기종 등), 원시림, 고산식물지대·특수 암석지대, 군락, 개체군 자생지 등이 있다.<sup>16</sup>

천연기념물(식물)의 유형은 식물분류의 계급이나 생물계의 계층구조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문화재보호위원회고시(제2호)」에서는 식물을 분류학적 측면에서 조류, 선대식물, 양치식물, 종자식물(겉씨식물, 속씨식물·쌍떡잎류, 속씨식물·외떡잎식물류, 식물군락)로 구분하고 있으며, Kamei and Nakagoshi(2000)는 『문화청 보관의 지정대장(文化庁保管の指定台帳)』을 바탕으로 식물을 개체, 개체군, 군락, 생태계, 경관으로 구분한 바 있다. 개체에는 거수, 명목, 가로수 등이 포함되고 개체군에는 특정 종의 군락(예,

앵초자생지), 복수종의 식물군락(원시림, 사총, 소택 식물군락 등), 생태계는 동·식물 군락, 경관은 복수의 다른 식물군락을 의미한다.

표 2. 일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기준(文部科学省 2016)

- 명목, 거목, 고목, 기형 나무 재배 식물의 모수, 가로수, 사총(社叢, 신사 내 신성한 숲)
- 대표적 원시림, 희귀 숲
- 대표적인 고산식물지대, 특수 암석지역 식물군락
- 대표적인 고원 식물 군락
- 해안 및 모래지역 내 식물 군락의 대표적인 것
- 이탄 형성 식물이 발생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것
- 동굴에 자생하는 식물군락
- 지천, 온천, 호수, 강, 바다 등의 희귀한 수초류, 조류, 선대류, 미생물 등이 생기는 지역
- 착생 식물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암석이나 나무
- 식물분포한계지 / 재배식물자생지 / 희귀 또는 멸종위기 식물의 자생지

표 3. 천연기념물 종류별 지정건수(文化庁 2016 · 2014년 기준)

천연기념물 유형	지정건수
동물	194(21)
식물	548(30)
지질광물	246(20)
천연보호구역	23(4)
합계	1,011(75)

\* 괄호안의 숫자는 특별천연기념물 지정건수

## 2) 천연기념물(식물) 지정현황의 변화

Kamei and Nakagoshi(2000)는 「일본의 천연기념물(식물) 보존 시스템」에 관한 논문에서 1920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일본 내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흐름을 크게 5 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 2). 이에 따르면 제1기(1920~1923)는 대부분 개체군 단위의 지정 비중이 많았고, 내용적으로는 희소한 개체군이나 분류학적, 분포학적, 생태적으로 특이한 산림 등 ‘식물의 희소성과 특이성’이 보호가치의 중심

15 文化庁, 2016, [www.bunka.go.jp](http://www.bunka.go.jp).

16 文化庁, 2016, [www.bunka.go.jp](http://www.bunka.go.jp); 文化遺産オンライン, 2016, [www.bunka.nii.ac.jp](http://www.bunka.nii.ac.jp); 2016; JATAFF(トップページ公益社団法人農林水産・食品産業技術振興協会), 2016, <https://www.jataff.jp>; 国指定文化財等データベース, 2016, [www.kunishitei.bunka.go.jp](http://www.kunishitei.bunka.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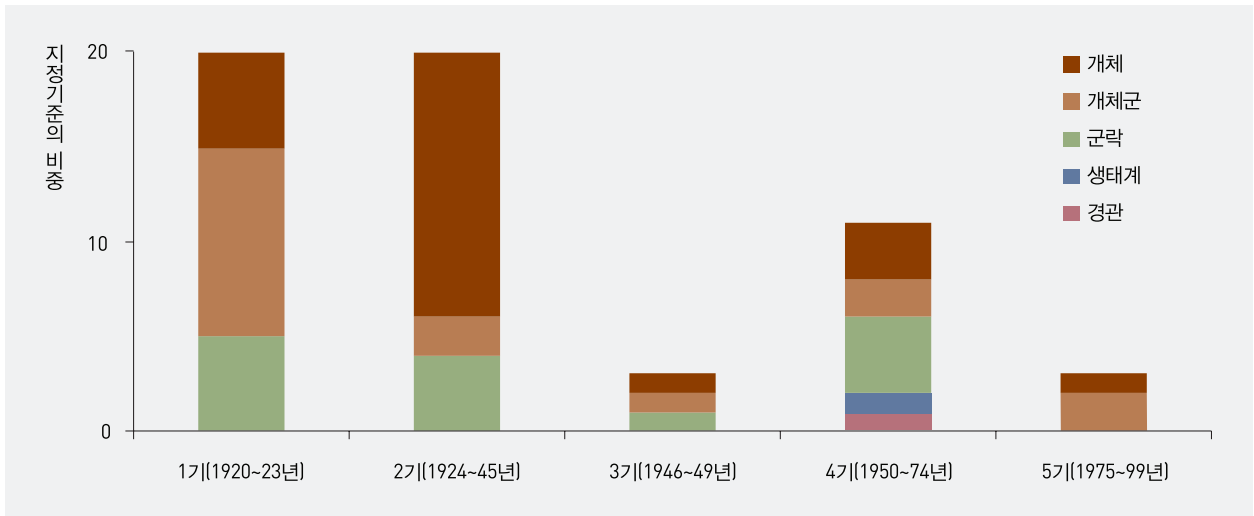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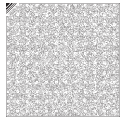


그림 2. 천연기념물(식물)의 유형별 시대별 지정건수(Kamei and Nakagoshi 2000 재작성).

이 되었던 시기이다. 이는 당시 활성화되었던 자연보호운동과 자연보호의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제2기(1924~1945)는 개체 중에서는 크고 오래된 나무가 중요하게 여겨져 노거수 등 개체 단위의 지정이 급증한 시기에 해당한다. 당시 천연기념물 보호에 있어 정서적 측면이 중요시되는 분위기에 따라 거목이 가지는 상징성이 지정 추진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제3기(1946~1949)는 전쟁 직후 새로운 지정이 없는 일종의 정체기에 해당한다. 제4기(1950~1974)는 개체 단위의 지정건수는 감소한 반면, 생태계, 군락 등 면적인 단위의 보호가 강화된 시기로 학문적으로는 생태학의 발전과 자연과괴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 보인다. 제5기(1975~1999)는 개체 및 개체군보다 군락 등 면 단위 지정이 계속 증시되며, 개체에 있어서는 역사, 민속, 군락에서는 사총(社叢) 등 문화적 가치에 따른 지정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연과 사람, 자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반적인 자연보호와 달리 일본의 문화적 배경이 되는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되었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노력은 200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 문화재 지정종목에서 '등록기념물'과 '문화적 경관'을 추가하고, 실제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식물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등록기념물'로 등록하거나 '중요 문화적 경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

때 천연기념물에 한정된 것은 아니나 식물을 포함한 자연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3) 문화재보호법 내 자연유산 관련 개정

앞서의 언급처럼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2005년 개정을 통해 특히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지정종목에서 '등록문화재'와 '문화적경관'이 추가되었다(표 4).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도 등록문화재제도는 있으나 문화재 유형이 통합되어 있고 근대문화유산 건축물과 동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문화재 유형마다 등록유형문화재, 등록유형민속문화재, 등록기념물 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유산도 상당수 등록기념물로 등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기념물은 유적, 명승지, 동물·식물·지질광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등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등록기념물은 천연기념물을 제외한 동·식물 및 지질광물 중에서 국토의 성립, 자연의 특징 또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것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식물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재배식물 및 생육지', '동물·식물 및 화석·광물의 화석 표본'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등록기념물 중 식물에 해당하는 기념물은 세 건으로 '키쿠치강 제방 가로수



(菊池川堤防のハゼ並木), ‘젠지마루가키(禅寺丸柿)’, ‘카쿠히카 표본(賀来飛霞標本)’이 있다. 키쿠치강 제방 가로수는 검양웃나무로 이루어진 가로수로 근대 목초산업의 터전으로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등록한 것이고, ‘카쿠히카 표본(賀来飛霞標本)’은 본초학자인 카쿠(飛霞, 1816~1894)가 채집한 표본 760점에 대한 것으로 근대시기에 해당하는 식물 표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등록한 것이다. 이외 명승 86건, 유적 8건을 포함한 96건이 등록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다(2016년 기준).<sup>17</sup>

두 번째로는 ‘문화적경관’에 관한 것이다. 문화적경관은 지역주민의 생활, 생업, 풍토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경관을 문화재로 규정한 것인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적경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중요문화적경관’에는 경작지, 벌초·방목지, 용채림·방채림, 채굴, 길, 울타리 등 자연과 사람의 관계 또는 상호간의 조화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의 고유한 풍경이 해당한다. 식물과 관련해서는 울타리 취락 경관의 일종인 오사와·카미오사와의 대나무울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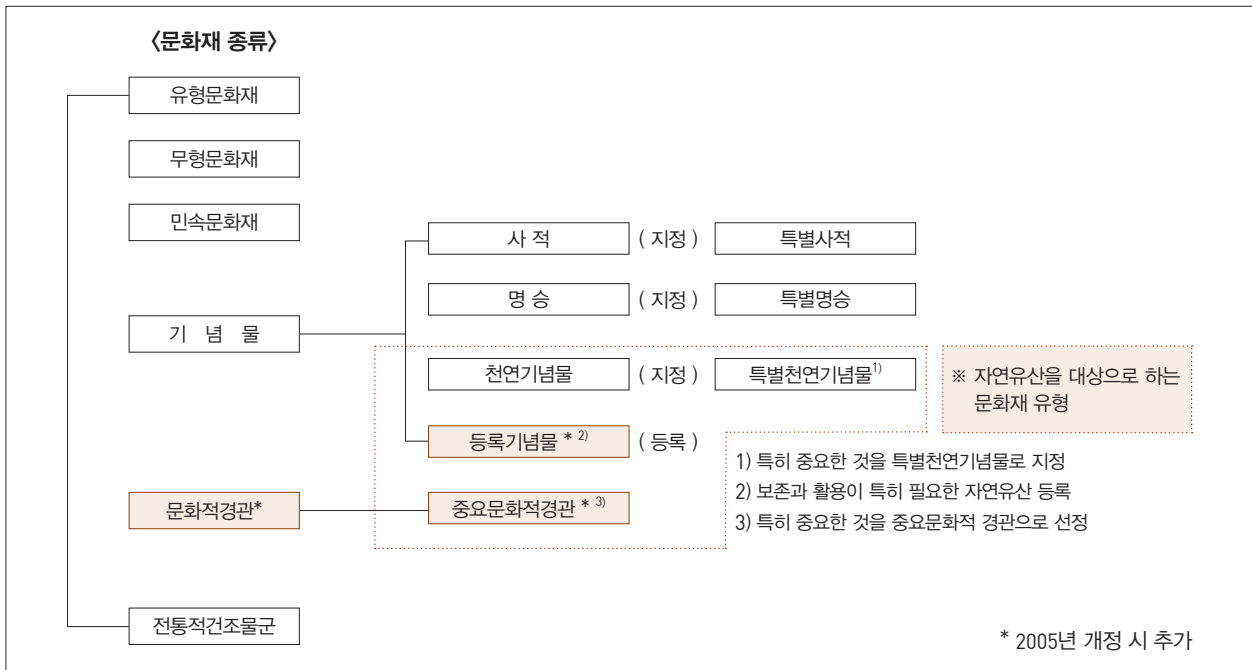
(大沢・上大沢の間垣集落景観)가 ‘중요문화적경관’으로 지정되어 있다.<sup>18</sup>

### 3. 독일의 천연기념물

#### 1) 제도 및 식물의 지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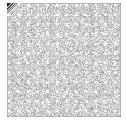
독일과 국내 천연기념물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천연기념물을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연방자연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자연보호법」 제4장(자연과 경관에 관한 보호) 28조에서 따르면 천연기념물은 자연적인 형상물로 특히 과학적, 자연사적, 문화경관적(지리학적) 이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희귀성, 고유성 또는 심미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5ha 미만의 자연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내 16개 주별 천연기념물 관련 조항은 「연방자연보호법」과 유사하나 지정기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바이에른주의 경우 ‘빙하의 흔적들, 지구역사적 특징들,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수종, 특수한 식물 등’의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며, 바덴뷔템베르크주는 ‘학문

표 4. 일본 문화재보호법 체계(文化庁 2016)



17 文化庁, 2016. www.bunka.go.jp.

18 文化庁, 2016. www.bunka.go.jp; 熊本県, 2016. www.pref.kumamoto.jp.



적, 환경적, 자연특징적인 문화적 이유들, 특수성' 등을 천연기념물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정의에서 알 수 있듯 독일 내 천연기념물은 문화적 가치보다는 자연적, 환경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 개정을 통해 '국립천연기념물'을 도입하면서 지정구역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방자연보호법」은 기존 제4장 24조 국립공원(Nationalparke)을 제 24조 국립공원·국립천연기념물(Nationalparke, Nationale naturmonumente)로 개정하고, 2013년 제24조의 (4)번 항목을 추가하였다(표 5). (4)번 항목은 국립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에 대한 것으로 제28조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과 동일하나 지정구역의 규모를 섬, 마을, 지역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립천연기념물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독일 내 천연기념물의 지정은 감소하는 반면 큰 규모의 면 단위 지정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독일 연방자연보호법 관련 조항

제24조 국립공원·국립천연기념물
(1) 국립공원은 법적으로 균일하게 보호
(2) 국립공원은 지역의 주된 부분에 자연역학의 자연적인 과정의 흐름, 국립공원은 과학 환경과 자연역사 교육 및 자연에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함
(3) 국립공원의 특별한 보호 목적의 기본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공간을 보호함
(4) 국립천연기념물 법적보호
1. 과학적, 자연의 역사, 문화 또는 국가 문화유산 이유에서 보호
2. 희귀함, 아름다움, 특색이 있는 것을 보호
국립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 구역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함

## 2) 천연기념물 유형 및 지정현황

독일의 천연기념물은 크게 점적 유형과 면적 유형으로 구분된다. 점적 유형에는 오래된 나무, 오래되거나 희귀한 초목, 길, 채석장, 동굴 등 특별한 자연현상을 가진 것들이 있다. 면적 유형으로는 중요한 종의 서식지, 습지, 황무지, 초원, 계곡 등의 다양한 비오톱(biotope)이 포함된다.<sup>19</sup>

비오톱(biotope)의 지정은 자연물이 가지는 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선(2009)은 독일 내에서 소택지, 초지, 산울타리 등의 비오톱이 가지는 서식지와 생태정점다리(stopping stone)로서의 생태적 역할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천연기념물이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자연보호법」에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내 천연기념물(식물)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35,7km<sup>2</sup>) 한 곳만 보더라도 14,02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중에서 점적 천연기념물은 7,837개소로 대부분 노거수가 차지하고 면적 천연기념물은 6,912개소에 달한다. 노거수로는 피나무(*Tilia amurensis* Rupr.), 너도밤나무(*Fagus engleriana* Seemen ex Diels), 밤나무(*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등이 있으며 기타 점적 유형으로는 계곡, 바위, 거리 등이 있다(Die freie Enzyklopädie 2016). 우리나라와의 면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정건수가 많고 식물의 유형도 노거수에서 산울타리, 초지, 소택지, 숲 등 그 종류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유사한 천연기념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및 식물의 유형 및 지정현황을 비교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향후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있어 기존의 학술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식물의 문화성과 역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물의 지정기준 및 유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천연기념물(식물)의 가치 및 지정사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점차 국가의 정체성 및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기념물의 지정이 증가하고

19 Die freie Enzyklopädie, 2016, <https://de.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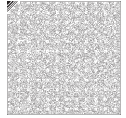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식물의 형태적 특이성, 희소성 등 학술적 가치가 천연기념물 지정의 중요 요소였다면, 점차 개체 단위에서는 민속 및 역사와 관련된 식물, 군락 단위에서는 사총(社叢) 등의 지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고유한 문화와 민속성, 향토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05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문화재 종류에 ‘문화적경관’을 새로 도입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복합문화경관을 보존하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한 보존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경관’에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을 새로 분류하거나 관련 식물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연기념물의 개념과 지정기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천연기념물의 시작이 자연보호 기조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여러 제반 여건이 변하는 시점에서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식물)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유형과 지정기준이 학술적 가치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의 문화성과 역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명하(2009)와 이선(2009)도 역사성, 문화성과 관련된 식물의 발굴 및 지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천연기념물(식물) 유형 개선 및 지정기준 개정은 초기 단계로 정책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구역 설정에 있어 점 단위에서 면 단위로의 확대지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독일에서도 노거수 등 개체 단위의 지정보다는 노거수 주변의 수목 또는 주변지역을 함께 묶어 지정하거나, 초본 및 목본 군락, 숲 등 면적 단위로의 지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군락 지정을 통해 식물종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정구역 확대를 통해 완충지대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천연기념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측면에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천연기념물(식물)의 약 60%가 노거수에 해당하고 지금까지는 점 단위 지정에 치중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부산

구포동 팽나무’를 ‘구포동 당숲’,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를 ‘삼척 갈전리 당숲’으로 개정하고 주변의 노거수를 묶어 군락으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와 관련하여 근대유산에 해당하는 식물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잠재 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등록문화재 제도는 있으나 건축물 및 동산문화재에 국한되어 있고 자연유산에 대한 별도의 등록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등록문화재를 문화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식물도 등록기념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유명무실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자연유산의 경우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등록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잠재 지정문화재를 발굴 및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강현경 · 이승재, 2004,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관리방안 2」 『환경복원녹화』 7(2), pp.36~46
- 김동욱 · 허복수 · 이승주 · 김효정, 2011, 「천연기념물 제514호 영덕 도천리 도천숲의 생태계 현황 및 수목 생육 특성 -식물생태계현황을 중심으로-」 『문화재』 44(1), pp.122~137
- 김성욱, 2010, 「북한의 명승지 · 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5(1), pp.501~533
- 김태식 · 이창훈 · 박인환 · 이혜영, 2009, 「전라도지역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생육 환경 분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pp.136~174
- 김태욱, 1969,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의 식물분류학적 고찰」 『문화재』 4, pp.195~208
- 김효정, 2012, 「천연기념물 식물의 토양현황과 관리방안 -충남북지역 노거수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 10, pp.41~52
- 나명하, 2009,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84
- 나명하 · 홍윤순 · 김학범, 2007a, 「남 · 북한의 천연기념물 관리제도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35(2), pp.71~80
- 나명하 · 홍윤순 · 김학범, 2007b, 「남 ·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35(5), pp.92~99
- 문화재관리국, 1998, 『천연기념물백서』, p.250
- 문화재청, 2010,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 · 번역 및 분석』, p.300
-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백서』, pp.17~20
- 박종민, 2003, 「북한의 천연기념물 관련제도와 현황」 『한국정원학회지』 21(2), pp.40~51
- 손지원 · 신진호, 2016, 「관리시설에 따른 천연기념물 노거수 생육상태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 30(3), pp.415~422
- 유창민, 2008, 「천연기념물 식물 군락지의 보호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촉백 수림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 26(1), pp.85~96
- 이선, 2009, 『한국의 자연 유산 천연기념물의 역사와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 수유산방, pp.51~82
- 이선, 2008,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연원과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3), pp.41~53
- 이우철, 1969, 「천연기념물에 관한 소고」 『한국식물분류학회』 1(1), pp.27~35
- 이지혜, 2014, 「홍도천연보호구역의 식생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94
- 조선총독부, 1934,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요목(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要目)』
- 조선총독부, 1919, 『조선거수로수명목지(朝鮮巨樹老樹名木誌)』
- 최병기 · 이진범, 2015,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림의 식물생태학적 가치 제고」 『한국전통조경학회』 33(4), pp.87~98
- 大日本山林檜, 1913, 「大日本老樹名木誌」 『JTBパブリッシング(2006)』
- 品田穰, 1972, 「天然記念物保護の歴史とその意義」 『天然記念物事典』, 文化庁文化財保護部監修
- Kamei, M. and Nakagoshi, N., 2000, The effectiveness of plant protection under Japan's natural monuments system, Landscape Research Japan 65(5)
- 법제처, 2016, <http://www.law.go.kr/main.html>
- 国指定文化財等データベース, 2016, [www.kunishitei.bunka.go.jp](http://www.kunishitei.bunka.go.jp)
-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 2016, [www.mext.go.jp](http://www.mext.go.jp)
- 文化遺産オンライン, 2016, [www.bunka.nii.ac.jp](http://www.bunka.nii.ac.jp), 2016
- 文化庁, 2016, [www.bunka.go.jp](http://www.bunka.go.jp)

## 참고문헌

- 熊本県, 2016, [www.pref.kumamoto.jp](http://www.pref.kumamoto.jp)
- BNatSchG, 2016, [http://www.gesetze-im-internet.de/bnatschg\\_2009](http://www.gesetze-im-internet.de/bnatschg_2009)
- Die freie Enzyklopädie, 2016, <https://de.wikipedia.org>
- JATAFF(トップページ公益社団法人農林水産・食品産業技術振興協会), 2016, <https://www.jataff.jp>
  
- wikipedia백과사전, 2016, [www.ja.wikipedia.org](http://www.ja.wikipedia.org)





#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Types of Natural Monument Plants in Different Countries

---

Son Ji-Won\* · Shin Jin-Ho · Ji Yun-Ui · Lee Na-Ra

National Heritag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wine814@hanmail.net

## Abstract

Natural monument system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introduced in Korea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Korea, Japan and Germany are the countries that have the natural monument systems. They are controlled by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Korea and Japan but by the law of the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Germany. For that reason the progress of the law and policy directions are similar between Japan and Korea. The natural monument system of Korea has been in use since 1930s, but the values and conditions of natural monument systems have changed over time. In terms of contents, these days cultural identity involved are getting more important than the natural scenic and ecological values, or rarity of plants. Also it's a trend to expand the preserved area around cultural properties which have been preserved on individual basis before. Finally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manage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s potenti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by creating the registration standard for natural heritage.

---

**Keywords** Natural heritag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Plants, Japan, Germany

**Received** 2017. 02. 14 • **Revised** 2017. 04. 26 • **Accepted** 2017. 05. 11